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통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

3. 주요내용

- 통·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조정 (별표)
 - 통·리장 정수 : 567명 ⇒ 573명으로 조정 (증 6명)
 - 고아읍 증 1개리 : 봉한 3리 → 봉한 3, 4리
 - 도량동 증 1개통 : 휴먼시아아파트 (35통)
 - 임오동 증 1개통 : 원림신축으로 분통 (20통)
 - 인동동 증 1개통 : 대동다숲 신축 (60통)
 - 진미동 증 4개통 : 과대 통 및 주택신축으로 분통(18~21통)
 - 공단1동 감 2개통 : 기숙사 이전으로 12,13통 폐지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(안 제1조)
 - 동법시행령 「제44조」를 「제81조」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가 2007.9.27 개정되면서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(2007.10.4)에 따른 관련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67명에서 고아읍과 도량·임오·인동동 각 1명 증가, 진미동 4명 증가, 공단1동 2명 감축으로 총6명이 증가된 573명으로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제1조중 동법시행령 「제44조」를 「제81조」로 조문을 변경하였음